

16. 강진군체육회기 및 직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02. 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진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체육회기에 관한 사항 및 체육회 직인의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기의 규격 등) ① 체육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② 깃봉은 주황색으로 하고 아랫부분에 꽃받침이 5편이 있는 둥근 모양에 가까운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되, 그 색은 주황색으로 하고 깃봉의 지름은 체육기 깃면 너비의 10분의 1로 한다.

제3조(게양) ① 체육기는 체육회 건물 및 체육회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깃면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으며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② 국기(군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체육기를 밖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쪽에 게양한다.

③ 체육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의 및 관리) ① 체육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注目)만으로 한다.

② 체육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 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직인의 비치사용) ① 체육회장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체육회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관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원의 공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원의 공인이란 수입관, 지출원을 말한다.

제7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체육회의 직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제외한다)의 글씨와 규격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3390호)을 준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 써야 하며 규격은 정방형 2.1cm로 한다.

제8조(각인) 직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한다.

제9조(직인의 교부 재교부) 직인의 교부 재교부는 사무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제10조(직인보관자) 직인의 보관자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보관방법)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자물쇠를 채워 보관하여야 한다.

- 제12조(직인날인)** ① 직인의 날인은 직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후 사무과장이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직인은 그 문서를 발행하는 체육회장의 표시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 ③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하거나 인쇄하여 날인할 수 있다.

부 칙 (2022. 02.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강진군체육회 이사회의 의결과 공포로 시행한다.